

2022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협성장학생」 선발 지원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며, 2021년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 <input type="checkbox"/> 2022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생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기타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수시합격자 - (재학생/22년 기준 2~3학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3.0(4.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input type="checkbox"/> 협성장학생 신청서 제출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피공제자(지급청구 중에 있는 자 포함)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생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기존에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원인원) 20명(예정) <input type="checkbox"/>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50만원(매 학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2022년 2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 (재학생) 2022년 1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기간을 포함한 8학기 기준/ 단, 이후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협성장학생 유지기준」의 심사를 거쳐 충족되는 자에 한해서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됨 <input type="checkbox"/> (지원혜택) 협성 해외자율탐방, 협성 해외봉사활동 지원 자격 및 가산점 부여
접수 기간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접수 기간) 2021.12.20.(월) ~ 2022.1.10.(월)【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input type="checkbox"/> (서류 합격자 발표) 2022.1.28.(월) <input type="checkbox"/> (면접심사) 2022. 2.7.(월) ~ 2.11.(금) <input type="checkbox"/> (최종 합격자 발표) 2022.2.14.(월)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금)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신청 서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공동서류 + 학년별 구비서류' 제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성장학생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설근로자 명의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건설근로자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설근로자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 1년분) 각 1부 ○ 건설근로자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1년분)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구 분	내 용
신청 서류	<p>□ 학년별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21.9월 이후 발급】 *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 (2022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대학합격통지서* * (수시합격자) 수시합격확인서 제출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원서(또는 수험표)를 제출 ※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2022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 합격확인서 -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 신청 원서(수험표)를 추가제출 ※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p>☞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장학생 유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유지)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 (독서 감상문)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연 4권)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 (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2회(연 4회) 개강, 인문학강의 참가 후 소감문 제출 ※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 (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 ※ 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이중수혜 불가) 타기관·단체 장학금 수혜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인정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 ○ 학적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입대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 (일반 휴학 시) 장학생에서 제외 ※ 단, 의·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이후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지원 - (전과 및 편입 시)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 <p>☞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이 가능합니다.</p> <p>☞ 매학기별 이루어지는「협성장학생 유지기준」심사를 거쳐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p>

2.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 팩스, 이메일 청구 불가

3. 공제회 지사·센터 팩스번호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 화	1666-1122 (311번)	1666-1122 (313번)	1666-1122 (312번)	1666-1122 (321번)	1666-1122 (322번)	1666-1122 (331번)	1666-1122 (341번)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 화	1666-1122 (315번)	1666-1122 (343번)	1666-1122 (314번)	1666-1122 (323번)	1666-1122 (332번)	1666-1122 (333번)	1666-1122 (342번)

※ 적립일수 확인 1666-1133 / 고객상담 1666-1122

※ 통화량이 많아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 고객참여 -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구비서류 발급 안내 】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 : 공제회 홈페이지 (www.cw.or.kr) - 고객참여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www.cw.or.kr/hanaro) - 고객센터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 기타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로 문의(1899-2732 / 월~금요일 9시~18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팩스로 수령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